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61
----------	-------

발의연월일 : 2025. 12. 18.

발 의 자 : 이해민 · 서왕진 · 박은정
정춘생 · 차규근 · 황운하
정진욱 · 서영석 · 한민수
손명수 · 조인철 · 이학영
이주희 · 최혁진 · 신장식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사, 플랫폼 기업 등에서 대규모 해킹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대한 침해사고 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단 운영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사고원인 제공자와 비용 부담 주체 간 불균형이 존재함.

또한 침해사고 피해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와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사용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며, 손해배상액도 실손해 범위에 한정되어 있어 사업자의 정보보호 의무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사고 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조사단 운영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 책임을 전환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정보보호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8조의4제9항 및 제48조의7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4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 운영에 소요된 비용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부담의 산정 방법, 납부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7(침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정도
2. 침해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규모
3. 침해사고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침해사고에 관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의 액수
5. 침해사고의 기간·횟수 등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재산상태
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후 피해 확산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사고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 ⑧ (생략) <u><신설></u>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u>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 운영에 소요된 비용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부담의 산정 방법, 납부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설></u>	<u>제48조의7(침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u>

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정도
2. 침해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규모
3. 침해사고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침해사고에 관하여 부과된

	<u>벌금 또는 과징금의 액수</u> <u>5. 침해사고의 기간·횟수 등</u> <u>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재</u> <u>산상태</u> <u>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u> <u>해사고 발생 후 피해 확산 방</u> <u>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기</u> <u>울인 노력의 정도</u>
--	---